

제18대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임시회의 개최 결과

〈 관련 근거 〉

- 해양경찰법 제11조(해양경찰청장)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(회의)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3명 이상의 위원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- 일시·장소 : '21. 12. 2.(목) 19:40 ~ 21:25,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- 참석인원 : 총 13명
 - (위원회) 위원장 1명 포함 해양경찰위원 총 7명
 - (해수부) 해수부장관 1명 [화상 참석]
 - (해경청) 해양경찰청장 후보자, 기획조정관, 기획재정·인사담당관, 해경위원회담당관 등 총 5명
- 상정 안건
 -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해양수산부 제출
-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 의결